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Seoul Family Court | 2014



서울가정법원

발간사 ▶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처음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연령, 가구소득 및 지역별 통계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산출하고, 최저양육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재판에서 정해지는 양육비 액수가 현실에 맞는 적절한 액수로 되고, 양육비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표된 후 2년 동안 돌아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고 액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부터 제2기 양육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하여 왔습니다.

2014. 5. 30. 공표된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였고,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양육자녀 2명인 가구의 전국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한 하나의 산정기준표를 만들었으며, 양육비 액수 산정에 있어 가산, 감산 근거로 고려될 수 있는 개별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수공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양육비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현실성과 구체적 타당성,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를 개별 사건에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또 다시 해결되어야

할 많은 쟁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쟁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일반 국민들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관들이 실제 재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더욱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후로도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과 비판에 항상 귀 기울이고, 토대가 되었던 통계자료가 갱신되면 이를 반영하여 다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해설서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양육비 재판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정과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되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4. 9.

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

CONTENTS ▶▶

● **간이해설서** I

I **서론** • 1

1.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1

2. 양육비 산정에 관한 민법 규정 및 양육비 산정의 필요성 1

 가. 민법의 규정 1

 나. 양육비 산정기준의 필요성 2

II **양육비 산정기준 제정 및 개정 경과** • 3

1.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 3

 가. 논의의 배경 및 경과 3

 나.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 4

2.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5

 가. 논의의 배경 5

 나. 논의의 과정 5

 다.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초자료 6

 라.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7

 마.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특징 10

 바.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의의 및 한계 10

3.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 11

 가. 논의의 배경 11

 나. 논의의 과정 13

Ⅲ 개정된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14

1.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14
2. 양육비의 내용	14
3. 표준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	16
가.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6
나. 최저생계비와 최저양육비	17
4.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18
가.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18
나.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특징	20
5.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가산, 감산 요소 및 적용 방법	22
가.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	22
나.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의 적용 방법	26
6.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비교	27
7.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의 의의	27
가. 양육비 액수의 현실화	27
나. 구체적 타당성 제고 방안 마련	28
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국민의 의사 반영	28

Ⅳ 양육비 산정기준 해설 • 29

1.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29
2.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 방법	29
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이용하여 표준양육비 결정	29
나. 가산, 감산 요소를 반영하여 구체적 양육비 총액 결정	30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31
라. 비양육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31

3. 구체적 적용사례	31
가. 사례 1	31
나. 사례 2	33

V 양육비 산정기준의 활용 • 34

1. 양육비 산정기준의 한계	34
2. 유의사항	34
가. 과거 양육비	34
나. 양육비 판결, 심판이 이미 있었던 경우	35
다. 나이 구간에 따른 양육비 산정 여부	35
라. 나이 구간의 변동에 따른 양육비 변경 청구의 경우	36
마. 판결문 또는 심판문에의 적시	36

표차례

[표 1]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3
[표 2] 자녀 나이별 최저양육비	7
[표 3]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국 월평균	8
[표 4]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도시 월평균	8
[표 5]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농어촌 월평균	9
[표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조사의 항목 및 세부내용	15
[표 7] 자녀 나이별 월평균양육비 (2012년)	16
[표 8] 전국 월평균 자녀 양육비 (2012년)	17
[표 9] 최저생계비의 연도별 변화	18
[표 10] 최저양육비의 연도별 추정	18
[표 11]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19
[표 12] 양육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 1인당 양육비	23
[표 13] 양육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 1인당 양육비	24

간이해설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0 ~199만원	200만원 ~299만원	300만원 ~399만원	400만원 ~499만원	500만원 ~599만원	600만원 ~699만원	700만 원 이상
자녀나이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000 20만원 ~ 58만 9천원	653,000 59만원 ~ 70만 7천원	761,000 70만 8천원 ~ 83만 3천원	906,000 83만 4천원 ~ 95만 8천원	1,012,000 95만 9천원 ~ 105만 9천원	1,106,000 106만원 ~ 131만 5천원	1,526,000 131만 6천원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000 23만 9천원 ~ 59만 7천원	705,000 59만 8천원 ~ 79만 1천원	878,000 79만 2천원 ~ 94만 2천원	1,008,000 94만 3천원 ~ 112만 3천원	1,238,000 112만 4천원 ~ 128만 5천원	1,334,000 128만 6천원 ~ 154만 6천원	1,759,000 154만 7천원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000 18만 5천원 ~ 62만원	708,000 62만 1천원 ~ 80만 4천원	902,000 80만 5천원 ~ 98만원	1,059,000 98만 1천원 ~ 113만원	1,202,000 113만 1천원 ~ 128만 6천원	1,371,000 128만 7천원 ~ 163만 8천원	1,906,000 163만 9천원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000 31만 3천원 ~ 67만 9천원	755,000 68만원 ~ 85만 1천원	947,000 85만 2천원 ~ 102만 1천원	1,095,000 102만 2천원 ~ 120만원	1,305,000 120만 1천원 ~ 141만 2천원	1,520,000 141만 3천원 ~ 178만 2천원	2,046,000 178만 3천원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000 34만 3천원 ~ 72만 5천원	844,000 72만 6천원 ~ 97만 9천원	1,115,000 98만원 ~ 115만 9천원	1,204,000 116만원 ~ 131만 4천원	1,424,000 131만 5천원 ~ 154만 6천원	1,668,000 154만 7천원 ~ 196만 8천원	2,270,000 196만 9천원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000 31만 4천원 ~ 107만 2천원	1,185,000 107만 3천원 ~ 124만 4천원	1,303,000 124만 5천원 ~ 133만 1천원	1,361,000 133만 2천원 ~ 154만 4천원	1,728,000 154만 5천원 ~ 185만 1천원	1,974,000 185만 2천원 ~ 209만 7천원	2,221,000 209만 8천원 이상

기초 설명

-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 2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 3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만 나이) 구간을 나타낸다.
- 4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한다.
 - ① 거주 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 ② 자녀수(통계적으로 자녀 1명인 경우 10%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20% 감산)
 - ③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간호비, 활동보조비 등)
 - ④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
 - ⑤ 부모의 재산상황
- 5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이다.

적용 사례

• 자녀가 2명인 경우

- 가족관계: 원고, 피고, 사건본인들은 만 15세 딸 1명과 만 8세 아들 1명
- 소득: 원고 월 평균 175만 원, 피고 월 평균 175만 원의 수입
- 사건본인들의 양육자: 원고

부모합산 소득	0~199만원	200만원~299만원	300만원~399만원	400만원~499만원	500만원~599만원	600만원~699만원	700만 원 이상
자녀나이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000	653,000	61,000	906,000	1,012,000	1,106,000	1,526,000
3세 이상 6세 미만	490,000	705,000	78,000	83만 4천원 ~ 93만 3천원	95만 9천원 ~ 106만 5천원	106만 원 ~ 117만 5천원	131만 6천원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50,000	750,000	902,000	98만 1천원 ~ 112만 3천원	128만 5천원 ~ 154만 6천원	154만 6천원 ~ 163만 8천원	154만 7천원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000	755,000	947,000	120만 원 ~ 141만 2천원	141만 2천원 ~ 178만 2천원	178만 2천원 ~ 196만 3천원	178만 3천원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34만 3천원 ~ 72만 5천원	72만 6천원 ~ 97만 9천원	98만 원 ~ 115만 9천원	116만 원 ~ 131만 4천원	131만 5천원 ~ 154만 6천원	154만 7천원 ~ 196만 8천원	196만 9천원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000	1,185,000	1,303,000	1,361,000	1,728,000	1,974,000	2,221,000

아들의 표준양육비

딸의 표준양육비

- 1 딸의 표준양육비: 111만 5천 원
(나이 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합산소득 300만 원~399만 원의 교차구간)
- 2 아들의 표준양육비: 90만 2천 원
(나이 6세 이상 12세 미만 및 합산소득 300만 원~399만 원의 교차구간)
- 3 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
111만 5천 원 + 90만 2천 원 = 201만 7천 원
- 4 피고의 양육비 부담액: 201만 7천 원 × 175만 원/350만 원 = 100만 8,500원
(딸에 관한 양육비 부담액은 55만 7,500원, 아들에 관한 양육비 부담액은 45만 1천원)
- 5 피고의 양육비 지급액은 특별한 가산·감산요소가 없는 한: 월 101만 원

본문

- I. 서론
- II. 양육비 산정기준 제정 및 개정 경과
- III. 개정된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IV. 양육비 산정기준 해설
- V. 양육비 산정기준의 활용

I. 서론

1.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양육비란 미성년자녀를 보호·교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혼인 중인 부모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자녀의 양육비용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서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다른 한편,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¹⁾²⁾³⁾

2. 양육비 산정에 관한 민법 규정 및 양육비 산정의 필요성

가. 민법의 규정

실무상 양육비 부담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비양육자)로 하여금 양육자로 지정된 자(양육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인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명하고 있는데, 양육비는 주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현실화되지 아니한 장래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한편 민법은 부부가 이혼 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거나,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민법 제837조, 제843조), 그 산정의 구체

-
- 1) 대법원은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당시, 15~64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자녀양육의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이혼 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이 이혼 당사자에게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기혼 남성 94%, 기혼 여성 95.3%).
 - 3) 한편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12세 미만 자녀들에게 자녀 1인당 월 7만 원씩의 양육비가, 중고등학생에게 1년에 5만 원 정도의 학용품비가 각 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적인 기준이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나. 양육비 산정기준의 필요성

2009년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으로, 협의이혼 시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효율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양육비 부담을 협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서에 기재하고 그 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도입되었고, 양육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행명령제도에 추가하여 새로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1291호, 2012. 8. 2. 시행)은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 제정, 2015. 3. 25. 시행) 제5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두어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12년 제1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는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재판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하여 발표한 바 있고, 이어 2014. 3. 10. 제2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가 구성되어, 물가상승률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2년에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던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들을 구체화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 이혼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용이해지고, 이혼 당사자들 역시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며, 나아

가 위 양육비 산정기준의 활용으로 법원의 양육비 재판에 대한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Ⅱ. 양육비 산정기준 제정 및 개정 경과

1.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

가. 논의의 배경 및 경과

실무상 양육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각 재판부마다 나름의 추상적 기준에 의해 금액이 책정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7년경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모임⁴⁾’을 발족하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위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모임에서는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각 가정에서 지출하는 양육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06.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를 토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하고, 위 기준표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소속 법관들의 설문조사 및 시범적용기간을 거친 후 2007. 11. 30.경 다음 [표 1]과 같은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1]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나이		소득	199만 원 이하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만 원 이상
			0~2세	기본 양육비	429,000	545,000	629,000
	자녀 개별비용	213,000	268,000	300,000	407,000	546,000	
3~5세	기본 양육비	510,000	647,000	748,000	994,000	1,429,000	
	자녀 개별비용	308,000	387,000	437,000	588,000	789,000	

4) 양육비 분과는 부장판사 1인(정승원)과 판사 4인(김형식, 지귀연, 이은정, 김영욱)으로 구성되었다.

나이 \ 소득		199만 원 이하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만 원 이상
6~11세	기본 양육비	537,000	682,000	785,000	1,047,000	1,505,000
	자녀 개별비용	339,000	426,000	476,000	647,000	868,000
12~14세	기본 양육비	590,000	750,000	870,000	1,151,000	1,655,000
	자녀 개별비용	386,000	485,000	543,000	737,000	989,000
15~17세	기본 양육비	681,000	866,000	998,000	1,329,000	1,911,000
	자녀 개별비용	471,000	592,000	666,000	899,000	1,206,000
18~20세	기본 양육비	832,000	1,057,000	1,222,000	1,622,000	2,332,000
	자녀 개별비용	596,000	749,000	838,000	1,138,000	1,527,000

나.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

2007년 양육비 기준안은 ① 민법 제8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둘 것, ②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할 것, ③ 산정방식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 ④ 자녀의 수에 따른 양육비 증가분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것 등의 사항을 기본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① 2006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있어, ‘자녀의 나이에 따른 평균양육비 금액’과 ‘가구소득별 평균양육비 금액’이 별개로 제시되어 있을 뿐,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통합한 통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대표구간을 선정하고 기준구간과의 비율에 따른 추정액을 산정함으로써 통계적인 의미를 감소시켰고, 이에 위 기준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못하고 단지 내부자료로서만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 ② 위 통계에서는 지역(도시와 읍, 면 단위 지역)과 자녀의 성별(남, 녀)에 따른 양육비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미미한데다, 이를 반영할 마땅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별, 성별 편차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③ 위 산정기준표에서 ‘소득’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합산소득으로 설정하였으나, 그 외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한 평가는 법관의 재

량사항에 맡김으로써 급여성화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득 파악이 용이한 반면, 월소득의 편차가 크거나 소득 누락이 심한 사업자의 경우, 또는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 정확한 소득 산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점, ④ 위 기준표에 의할 경우 부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 총액은 산정되지만, ‘어떻게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2.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가. 논의의 배경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위와 같은 한계로 인해,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활용해오던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완하여,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⁵⁾에서 2007년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자녀 나이별⁶⁾, 가구소득별⁷⁾ 양육비 지출 통계가 산출되어, 자녀의 나이와 가구소득을 통합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위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되었고, 통계자료에 근거한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산출방법⁸⁾까지 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07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점을 보완한 새로운 기준표의 마련이 가능해졌다.

나. 논의의 과정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2. 1. 4. 법관 및 조사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양육비위원회’⁹⁾를 발족하여,¹⁰⁾ 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
-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
 6) 자녀나이를 영아(0~2세), 유아(3~5세), 초등학교(6~11세), 중학생(12~14세), 고등학교(15~17세), 대학생(18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7) 99만 원 이하, 10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8) 통계에 의하면, 부양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 1인당 총양육비의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법관 6인(손왕석 수석부장판사, 배인구 부장판사, 송인우, 이광우, 이은정, 김혜란 판사), 전문조사관 1인(백은형), 외부위원 3인(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법관 인사이동 등으로 김현진, 전연숙, 김태호 판사가 구성원에 추가되었다.

먼저 2012년 제1기 양육비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기에 앞서 현행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비 협의의 경향성과 실태를 검토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제1기 양육비위원회는 판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 및 수차례에 걸친 토의를 거쳐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 2012. 3. 26.부터 3. 30.까지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와 사법연수원 가사재판장연수에서 가사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청취의 기회를 가졌으며, 2012. 4.경에는 이를 토대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시민배심법정을 개최하였다.¹¹⁾ 나아가 2012. 5.경에는 서울가정법원 법관들과 가사소년재판 커뮤니티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양육비 산정의 쟁점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개하기에 앞서 양육비 판결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2011. 9.부터 2012. 2.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양육비 지급 판결 내역을 분석하였다.¹²⁾

다.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초자료

1)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2년 제1기 양육비위원회에서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 자녀 양육비가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① 자녀 1인당 월평균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② 자녀의 수에 따라 지출하는 양육비는 그 총액은 증가하지만 자녀가 1명인 경우와 비교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8배, 3명인 경우에는 2.2배의 양육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

10) 위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구성에 따라 2012. 3. 27. 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산정을 위한 연구 자료를 서울가정법원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11) 양육비위원회는 2012.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배심법정(배심원 9인 참여), 2012.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배심원 9인, 그림자배심원 22인 참여)의 평의를 거쳤다.

12) 양육비위원회 소속 김태호 판사와 백은형 조사관이 2011. 9.~2012. 2.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한 사례 270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녀 1인당 30~50만 원 구간이 8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1인 당 평균양육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었으며, ③ 거주 지역에 따라 지출하고 있는 월평균양육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평균 2%의 양육비가 더 지출되고,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약 13%가 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최저양육비 개념 도입

또한 양육비위원회는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¹³⁾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자녀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최저양육비 개념을 도입하였다. 양육비위원회는 최저생계비를 자녀 양육비에 도입하기 위하여 표준 성인을 기준으로 자녀가 지출하는 비용의 비율인 성인균등화지수¹⁴⁾를 사용하여 최저양육비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¹⁵⁾

[표 2] 자녀 나이별 최저양육비

(단위: 원 / 월)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21세 이상
2012년	175,987	208,827	161,695	274,596	301,220	275,947	271,440

라.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양육비 산정기

13)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12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표한다. 이를 위해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표 9]와 같다.

14) 균등화지수는 서로 다른 가구 규모 및 가구구성원을 가진 가구들 사이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술적 지수를 말하며,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간 지출 또는 복지를 비교한 가구균등화지수와 표준성인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구성원 간 지출을 비교한 성인균등화지수로 구분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89년 TCH(Tedford, Capps and Havlick에 의하여 1986년에 발표된 모형)모형에 우리나라의 학제구분을 첨가하여 나이별 성인균등화지수를 계측한 바 있고, 제1기 양육비위원회에서는 위 모형의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보완된 새로운 성인균등화지수모형을 활용하였다.

15) 자녀 1인당 최저양육비는 3인 가구(부부와 자녀 1인)를 기준으로 하고, 가족구성원의 나이는 부부 40세~50세(성인균등화지수 1.0), 자녀는 각 나이 구간의 중간 나이(성인균등화지수 1세 0.3375, 4세 0.4135, 9세 0.3059, 13세 0.5816, 15~17세 0.6565, 19세 0.5853, 21세 0.5730)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준표를 만든 것이 다음 [표 3]이다.

[표 3]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국 월평균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합산소득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4.3 (17.6~51.4)	58.6 (51.5~65.0)	71.4 (65.1~80.2)	89.0 (80.3~94.0)	99.1 (94.1~103.0)	107.0 (103.1~107.8)	108.7 (107.9~∞)
3~5세	47.3 (20.9~55.8)	64.3 (55.9~74.4)	84.5 (74.5~92.4)	100.4 (92.5~104.7)	109.0 (104.8~114.2)	119.4 (114.3~132.5)	145.7 (132.6~∞)
6~11세	46.3 (16.2~56.5)	66.7 (56.6~75.6)	84.5 (75.7~90.9)	97.3 (91.0~106.9)	116.5 (107.0~122.2)	128.0 (122.3~137.2)	146.4 (137.3~∞)
12~14세	48.9 (27.5~60.8)	72.7 (60.9~79.4)	86.1 (79.5~96.2)	106.4 (96.3~115.8)	125.2 (115.8~134.0)	142.9 (134.1~155.0)	167.2 (155.1~∞)
15~17세	56.5 (30.1~67.6)	78.8 (67.7~88.5)	98.3 (88.6~108.9)	119.5 (109.0~131.3)	143.2 (131.4~154.5)	165.9 (154.6~177.8)	189.8 (177.9~∞)
18~20세	84.6 (27.6~92.9)	101.2 (93.0~111.8)	122.5 (111.9~131.3)	140.1 (131.4~148.8)	157.5 (148.9~175.4)	193.4 (175.5~193.6)	193.9 (193.7~∞)

한편 2012년 양육비위원회는 자녀의 거주 지역에 따라 위 전국 평균양육비 산정기준에 도시의 경우 2%를 가산하고, 농어촌의 경우 13%를 감산하여 실제 사건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표 4], [표 5]와 같이 별도의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발표하였다.

[표 4]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도시 월평균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합산소득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표 5]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농어촌 월평균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합산소득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1.8)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 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위 산정기준표에서 각 표의 가로축은 부모의 합산소득이고,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이다.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가 만나는 지점에 표준양육비의 구간 평균값과 구간의 범위를 함께 기재하였다. 구간의 범위를 함께 기재한 것은 소득구간이 100만 원 단위로 나뉘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평균값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소득에 대응하는 적절한 양육비의 값을 구하기 위함이다. 다만 합산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구간별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은 각 소득 구간별 구간 평균값의 중간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¹⁶⁾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표 1]의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달리 활용빈도가 적은 합산소득 99만 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합산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최저 금액을 자녀 1인당 최저양육비로 정하여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합산소득 500만 원 이상 구간을 합산소득 500~599만 원, 600~699만 원, 700만 원 이상까지로 세분화하여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 [표 3]의 자녀나이 0~2세, 부모합산소득 200~299만 원 구간의 평균값은 58.6만 원이고, 구간의 범위는 51.5만 원~65.0만 원이다. 이때 51.5만 원은 자녀나이 0~2세 중 직전 소득구간(~199만 원) 평균값 44.3만 원과 당해 구간의 평균값 58.6만 원의 중간금액이고, 65.0만 원은 이후 소득구간(300~399만 원) 평균값 71.4만 원과의 중간금액이다. 이는 구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앞서 요약한 통계 자료로는 각 구간의 개개 소득액에 대응하는 평균양육비를 구할 수 없어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다.

마.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특징

1) 자녀의 나이 및 가구소득별 통합기준안 마련

2009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자녀의 나이와 가구소득을 통합한 통계가 제시됨에 따라,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위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산출방법까지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¹⁷⁾. 이로써 2007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임의로 대표구간을 선정하여 추정했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역별 편차 반영

향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전국 법원에서 활용될 것을 고려하여 도시(동)와 농어촌(읍, 면)의 산정기준표를 따로 만들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도시지역에 해당하므로 2%를 가산해야 하고, 농어촌의 경우 13%를 일일이 감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각각의 기준표를 별도로 만들어 편리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 최저양육비 개념 도입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던 바, 최저양육비의 개념을 도입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반영하였다.

4) 특이 사안에 대한 고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들, 예컨대, 무자력자인 경우,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 자녀의 연수나 유학으로 교육비 지출이 과다한 경우 등을 상정하여 시민배심재판의 평결을 거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바.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의의 및 한계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관 및 조사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육비위원회

17) 통계에 의하면, 부양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 1인당 총양육비의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하되, 자녀가 2명인 경우 1.8배, 3명인 경우 2.2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에서 각종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것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적절한 양육비 산정방법을 만들어 내고자 두 차례에 걸친 시민배심원단의 평의절차를 거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역시 거주 지역, 자녀수 외에 다른 가산, 감산 요소들을 열거하지 않고 이를 포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만 맡김으로써, 당초 기대한 바와 달리 이혼에 직면한 당사자가 양육비의 액수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나아가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양육비를 산정하기 어려워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널리 이용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3.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

가. 논의의 배경

1) 새로운 기초 통계자료의 반영 필요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마다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라 2012년도에 가구소득 및 자녀 나이에 따른 자녀 1인당 월평균양육비 통계자료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이에 물가상승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제반 사정들이 반영된 새로운 양육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조금 더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양육비 관련 판례 분석 결과 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5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을 대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표된 이후인 2012. 6. 1.부터 조사시점인 2013. 2. 5.까지 선고된 판결 내지 심판 중 '양육비'를 검색어로 하여 각 법원에서 선고된 양육비 판결 내지 심판 992건 가량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¹⁸⁾ 그 결과,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이후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양육비가 상향 결정¹⁹⁾되고 있으나, 판결문

18) 박복순·송효진·전경근·현소혜(2013),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II)-가족 관련 판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지 심판문 상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건수가 38건²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앞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위와 같은 분석 대상 판결 내지 심판 중에는 실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한 경우에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해당 문구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고, 가사 단독 재판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득 자료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사례 및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는 크게 다툼이 없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외부에서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해 놓고도 실제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이루었다.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공포

2014. 3. 24. 제정하여, 2015. 3. 25. 시행 예정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이미 시행 중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었고, 위 법률 제6조에서는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두어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 제7조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자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 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자녀 1인당 양육비가 50만 원 이하로 결정된 사건의 비율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발표 이전인 2011. 9.부터 2012. 2.까지 선고된 사건을 기준으로 82.9%였으나, 공표 이후 69.7%로 감소하였다.

20) 서울 31건, 대구 2건, 대전 4건, 부산 1건이다.

그러나 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통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정한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에 따라 이혼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구체화되고 집행력을 가지게 되는 점, ② 나아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과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온 점, ③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가정법원이 지금까지의 예와 같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그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받는 등 협력을 얻어 재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나. 논의의 과정

이에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 이후의 적용 성과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며, 2012년도에는 공표하지 못했던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들을 구체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2014. 3. 10.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작업을 위한 제2기 양육비 위원회²¹⁾가 구성되었다.

제2기 양육비위원회에서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2012년 통계를 반영하고,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 기준표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판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수원, 인천, 의정부지방법원 및 각 산하 지원의 가사사건 담당 판사들²²⁾을 초대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형식과 내용을 확정하여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받

21) 제2기 양육비위원회는 법원측 8명(배인구 부장판사(회장), 홍진표, 권양희, 김성우, 제갈창, 김혜진, 전경태 판사, 백은형 전문조사관), 외부 전문가 4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윤강모 사무관)으로 구성되었다.

22) 수원지방법원 김은교 판사, 안양지원 김경수 판사, 안산지원 박기주 판사, 고양지원 오규성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배관진 판사가 참석하였다.

영하기 위하여 2014. 5. 9. 공청회²³⁾를 개최하였으며, 가사소년재판커뮤니티에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안)의 내용을 공개하여 전국 가사사건 담당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후, 2014. 5. 26. 4차 회의를 거쳐 2014. 5. 30.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다.

Ⅲ. 개정된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1.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 그와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육비를 결정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양육비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도 이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양육비의 내용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므로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 뿐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등 다양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양육비는 부모가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직장에서의 지원 등은 양육비에서 제외한다.

23) 2014. 5. 9.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복순 연구위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의의 및 필요성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가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각 발제를 담당하였고, 한국한부모연합의 전영순 공동대표가 한부모가 바라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상담사례에서 나타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에 관하여, 부산가정법원의 박숙희 판사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실무상 쟁점에 관하여 지정토론했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에게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총칭하므로 자녀 개인이 소비하는 비용²⁴⁾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비용²⁵⁾을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양육비 관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양육비의 지출항목은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조사의 항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조사의 항목 및 세부내용

항목	세부내용
주거 및 수도광열비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연료비(도시가스, 기름) 등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식기주방용품, 침구 및 직물제품, 실내장식품(커튼 등 포함)
교양오락비	신문, 잡지, 도서, 교양오락기구(TV, 오디오, 컴퓨터 등) 구입, 극장 입장료, 스포츠 관람료, 스포츠시설 이용료, 문화시설 입장료, 교양오락 강습료, 사진대, 단체여행비 등(완구, 오락기기 구입)
교통통신비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자동차 구입, 연료비, 정비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통신비(일반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및 PC통신이용료, 기타(스쿨버스비))
기타소비·비소비지출	이·미용비(목욕비 포함), 장신구(가방, 핸드백 등) 구입비, 종교관계비, 회비 및 교제비, 경조금, 기타 잡비(용돈 등)
식료품비	곡류, 육류, 낙농류,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실류,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외식비(학교급식비 포함), 각종 이유식
피복비	외의, 스웨터, 셔츠, 내의, 직물, 기타 피복, 신발, 양말, 모자, 운동화, 교복, 종이거저귀, 세탁비, 수선비 등
보건의료비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안경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비 및 입원비 등), 영양제, 한약제
교육비(공교육비)	유치원비, 학교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교과서 및 기타 학교교재, 참고서, 학습용 테이프), 문방구비
보충교육비(사교육비)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

자료: 김승권 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 자녀개인비용, [표 6]에서 후자 5개 항목인 식료품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25) 가구공동비용, [표 6]에서 전자 5개 항목인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비소비지출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3. 표준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

가.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제2기 양육비위원회에서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 자녀 양육비가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²⁶⁾ 자료를 재분석하여 실제 가구 소비 지출 중 자녀에게 소비되는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였다.

위 통계자료의 분석결과 우리나라 자녀 1인당 월평균양육비 지출액은 2003년 748,000원, 2006년 912,000원, 2009년 1,009,000원, 2012년 1,189,000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취학 전 자녀를 위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급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이 다소 가벼워졌지만, 자녀 1인당 월평균양육비를 나이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이 나이가 높아질수록 양육비 지출 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7] 자녀 나이별 월평균양육비 (2012년)

(단위: 만 원)

	자녀나이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양육비	85.1	102.4	105.5	114.5	131.1	160.6

한편 위 통계자료에 따른 우리나라 전국 월평균 자녀 양육비는 다음 [표 8]과 같은데, 이는 우리나라 전국 평균 자녀수 1.98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6) 위 조사는 전국 가구를 대표하는 18,000여 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이들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등 해당 가구에서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자녀 10,48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8] 전국 월평균 자녀 양육비 (2012년)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합산소득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3세 미만	52.0 (19.8~58.2)	64.6 (58.3~69.9)	75.3 (70.0~82.4)	89.6 (82.5~94.8)	100.1 (94.9~104.7)	109.4 (104.8~130.1)	150.9 (130.2~∞)
3~6세 미만	48.5 (23.6~59.1)	69.7 (59.2~78.2)	86.8 (78.3~93.2)	99.7 (93.3~111.1)	122.5 (111.2~127.2)	131.9 (127.3~152.9)	174.0 (153.0~∞)
6~12세 미만	52.7 (18.3~61.3)	70.0 (61.4~79.6)	89.2 (79.7~96.9)	104.7 (97.0~111.8)	118.9 (111.9~127.2)	135.6 (127.3~162.0)	188.5 (162.1~∞)
12~15세 미만	59.7 (31.0~58.2)	74.7 (58.3~84.2)	93.7 (84.3~101.0)	108.3 (101.1~118.7)	129.1 (118.8~139.7)	150.3 (139.8~176.3)	202.4 (176.4~∞)
15~18세 미만	60.1 (33.9~71.8)	83.5 (71.9~96.9)	110.3 (97.0~114.7)	119.1 (114.8~130.0)	140.9 (130.1~152.9)	165.0 (153.0~194.7)	224.5 (194.8~∞)
18~21세 미만	94.9 (31.1~106.0)	117.2 (106.1~123.0)	128.9 (123.1~131.7)	134.6 (131.8~152.7)	170.9 (152.8~183.1)	195.3 (183.2~207.5)	219.7 (207.6~∞)
21~22세 미만	96.4 (31.1~104.2)	112.0 (104.3~120.7)	129.4 (120.8~145.6)	161.8 (145.7~170.6)	179.5 (170.7~190.9)	202.4 (191.0~216.9)	231.4 (217.0~∞)

나. 최저생계비와 최저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이 경우 부모의 양육책임을 환기하며 소액의 양육비라도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설득하고 있다.

제1기 양육비위원회는 그와 같이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녀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최저양육비 개념을 도입하였고, 제2기 양육비위원회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연도별 변화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최저생계비의 연도별 변화

(단위: 원 / 월)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인상률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4.8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75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5.6
2012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3.9

제1기 양육비위원회는 위와 같은 최저생계비를 자녀 양육비에 도입하기 위하여 표준 성인을 기준으로 자녀가 지출하는 비용의 비율인 성인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최저양육비를 산출하였고, 제2기 양육비위원회는 위 최저양육비 개념을 유지하면서 2009년 자녀 나이별 최저양육비에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의 최저생계비 인상률²⁷⁾을 적용하여 이를 현실화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최저양육비의 연도별 추정

(단위: 만 원)

연도	자녀나이							인상률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21~22세	
2009	17.6	20.9	16.2	27.5	30.1	27.6	-	-
2010	18.1	21.5	16.6	28.3	30.9	28.4	좌동	2.75
2011	19.1	22.7	17.6	29.8	32.7	29.9	좌동	5.6
2012	19.8	23.6	18.3	31.0	33.9	31.1	좌동	3.9

4.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서울가정법원은 2014. 5. 30. 다음 [표 11]과 같이 개정된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다.

27)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6%, 2012년 3.9%이다.

[표 11]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0 ~199만원	200만원 ~ 299만원	300만원 ~ 399만원	400만원 ~ 499만원	500만원 ~ 599만원	600만원 ~ 699만원	700만원 이상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000 20만원~58만9천원	653,000 59만원~70만7천원	761,000 70만8천원~83만3천원	906,000 83만4천원~95만8천원	1,012,000 95만9천원~109만9천원	1,106,000 106만원~131만5천원	1,526,000 131만6천원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000 23만9천원~59만7천원	705,000 59만8천원~79만1천원	878,000 79만2천원~94만2천원	1,008,000 94만3천원~112만3천원	1,238,000 112만4천원~128만5천원	1,334,000 128만6천원~154만6천원	1,759,000 154만7천원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000 18만5천원~62만원	708,000 62만1천원~80만4천원	902,000 80만5천원~98만원	1,059,000 98만1천원~113만원	1,202,000 113만1천원~128만6천원	1,371,000 128만7천원~163만6천원	1,906,000 163만9천원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000 31만3천원~67만9천원	755,000 68만원~85만1천원	947,000 85만2천원~102만1천원	1,095,000 102만2천원~120만원	1,305,000 120만1천원~141만2천원	1,520,000 141만3천원~178만2천원	2,046,000 178만3천원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000 34만3천원~72만5천원	844,000 72만6천원~97만9천원	1,115,000 98만원~115만9천원	1,204,000 116만원~131만4천원	1,424,000 131만5천원~154만6천원	1,668,000 154만7천원~196만6천원	2,270,000 196만9천원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000 31만4천원~107만2천원	1,185,000 107만3천원~124만4천원	1,303,000 124만5천원~133만1천원	1,361,000 133만2천원~154만4천원	1,728,000 154만5천원~185만1천원	1,974,000 185만2천원~209만7천원	2,221,000 209만8천원 이상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년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제반 사정들이 반영된 새로운 양육비 통계자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개별 사정들을 가산, 감산 요소로서 구체화하여 현실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높였다. 위 산정기준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4인 가구(양육 자녀 2명)를 표준으로 삼기 위하여, 전국 평균 자녀수 1.98명을 기준으로 한 전국 월평균 1인당 양육비를 나타내는 [표 8]의 수치에 양육 자녀수에 따른 가중치 1.011을 곱한 것이다.

위 산정기준표 역시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같이 표의 가로축은 부모의 합산소득을,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를 나타내며,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가 만나는 지점에 표준양육비의 구간 평균값과 구간의 범위를 함께 기재하였다. 이는 소득구간이 100만 원 단위로 나뉘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평균값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소득에 대응하는 적절한 양육비의 값을 구하기 위함이다. 합산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최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구간별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은 각 소득구간별 구간 평균값

의 중간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나.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특징

1) 부모 합산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

위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한편, ① 활용빈도가 적은 합산소득 99만 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② 합산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최저 금액을 자녀 1인당 최저양육비로 정하여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구성한 점, ③ 합산소득 500만 원 이상 구간을 합산소득 500~599만 원, 600~699만 원, 700만 원 이상까지로 세분화하여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같다.

2) 자녀의 나이 구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낸다.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의 나이 구간을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로 표시하였는데, 해당 나이가 구간에 걸쳐있는 경우, 예컨대 만 2세에서 만 3세 사이 자녀의 경우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자녀 나이 구간의 표시를 0세 이상 3세 미만, 3세 이상 6세 미만, 6세 이상 12세 미만, 12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성년에 이르는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자녀 나이 구간도 만 19세 미만까지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① 실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가 만 18세에서 21세 미만²⁸⁾의 표본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인데, 그와 같이 얻어진 양육비 수치를 그대로 두고 나이 구간만을 만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표시할 경우 통계

28)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의 왜곡이 생기는 점, ② 만 18세에서 19세 미만의 구간으로 한정하여 통계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표본의 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산출할 수 없는 점, ③ 한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의 성년에 도달하였더라도, 해당 자녀의 대학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²⁹⁾을 고려하여 보면,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양육비를 정하는 경우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나이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3) 자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양육비

개정된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가량이 2명의 양육 자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산출하였다.

이는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한 명의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기준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양육자가 두 명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경우에는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하고³⁰⁾, 세 명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³¹⁾하였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4) 가산, 감산 요소의 확정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① 거주 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③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④ 부모가 쌍방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 ⑤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각 가산, 감산 요소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29)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당시의 조사 결과, 15~64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 한계에 대한 의견은 '대학졸업 때까지'가 49.6%로 가장 많았다.

30) 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에 0.9를 곱하여 합산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31) 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에 0.733을 곱하여 합산하여도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최저양육비 개념의 유지

최저양육비는 부모합산소득 0~199만 원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으로서, 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이다.

한편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최저양육비는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최저양육비에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얻어진 [표 10]에서의 2012년 최저양육비 추정 금액에 양육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6) 전국 평균의 양육비를 기준으로 한 하나의 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자녀가 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출되는 양육비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지출되는 양육비를 비교하여 본 결과, 농어촌의 경우 오히려 많은 양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된 구간이 상당 부분 발견되었고, 통계자료를 제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농어촌 양육비 자료의 경우 표본조사의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통계적 한계로 인하여,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도시와 농어촌을 통합한 전국 평균의 양육비를 하나의 표로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전국 평균의 양육비를 기준으로 작성·공표하되, 도시 또는 농어촌이라는 지역 요소는 개별적인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로서 고려하기로 하였다.

5.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가산, 감산 요소 및 적용 방법

가.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

1) 거주 지역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달리 도시와 농어촌으로 거주 지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고, 전국 평균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산정기준표를 제

시하면서 자녀의 거주 지역이라는 개별 요소를 양육비의 가산, 감산 요소의 하나로 적시하였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의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는 평균양육비에 2%를 가산하고, 자녀의 거주 지역이 농어촌인 경우는 평균양육비에 12%를 감산하여 1인당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거주 지역을 양분하여 위와 같은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도시 간의 격차 또는 농어촌 간의 격차를 무시한 것이거나, 같은 도시 내라 할지라도 거주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³²⁾ 따라서 통계적인 수치에 얽매이는 것 보다는 해당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 여건을 개별 가산, 감산 요소로 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의 거주 지역을 양육비 산정의 가산, 감산 요소로 반영한다면, 양육자가 비양육자와의 합의 아래 자녀를 해외에서 양육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물가를 고려하여 이를 양육비 산정의 가산 또는 감산 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수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양육 자녀가 2명인 점을 고려하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육 자녀가 1명인 경우 평균양육비에 10%를 가산하고, 양육 자녀가 3명인 경우 평균양육비에 20%를 감산하여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산출한 양육 자녀 1명인 경우의 양육비는 [표 12]와 같고, 양육 자녀가 3명인 경우의 자녀 1인당 양육비는 [표 13]과 같다.

[표 12] 양육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 1인당 양육비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합산소득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57.5	71.4	83.2	99.0	110.6	120.9	166.7
3~5세	53.6	77.0	95.9	110.2	135.4	145.8	192.3

32) 실제로 제2기 양육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수도권 인근 지역 도시에서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및 가사소년재판커뮤니티 소속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요소를 ①서울, ②광역시, ③일반 도시, ④읍면지역의 농촌, ⑤그 외 농촌으로 세분화하여 가중치를 별개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자녀 나이	부모합산소득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6~11세	58.2	77.4	98.6	115.7	131.4	149.8	208.3
12~14세	66.0	82.5	103.5	119.7	142.7	166.1	223.7
15~17세	66.4	92.3	121.9	131.6	155.7	182.3	248.1
18~20세	104.9	129.5	142.4	148.7	188.8	215.8	242.8
21~22세	106.5	123.8	143.0	178.8	198.3	223.7	255.7
18~22세	105.3	128.2	142.5	156.9	192.0	218.5	247.0

[표 13] 양육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 1인당 양육비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합산소득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1.7	51.7	60.3	71.8	80.2	87.6	120.9
3~5세	38.8	55.8	69.5	79.9	98.1	105.7	139.4
6~11세	42.2	56.1	71.4	83.9	95.2	108.6	151.0
12~14세	47.8	59.8	75.1	86.7	103.4	120.4	162.1
15~17세	48.1	66.9	88.4	95.4	112.9	132.2	179.8
18~20세	76.0	93.9	103.2	107.8	136.9	156.4	176.0
21~22세	77.2	89.7	103.6	129.6	143.8	162.1	185.4
18~22세	76.3	92.9	103.3	113.7	139.2	158.4	179.0

3) 중증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

양육비 심리를 통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하여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 간호비, 활동보조비가 소요됨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녀의 장애등급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 부모가 쌍방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양육비의 개념에는 일반적인 사교육을 위한 지출³³⁾도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33)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

이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부모 쌍방이 이혼 전부터 합의한 유학비, 예체능 등 고액의 특기 교습비 등은 양육비 가산 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혼 이후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교육방침에 따른 고액의 교육비는 제외함이 타당³⁴⁾하다.

5) 재산 상황(동산, 부동산, 부채)

자녀의 양육비를 정하는데 있어, 부모의 재산 상황은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요소이다. 다만 부모의 재산 상황을 어떻게 참작할 것인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를 양육비 산정의 직접적 기준으로 채택한 예가 확인되지 않아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당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에도 위와 같은 한계로 말미암아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부모의 재산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의 양육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산, 감산 요소로 명시하였다.

6)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에 관한 기타 의견³⁵⁾

앞서 살펴본 5가지 양육비의 가산, 감산 요소 이외에도, ①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의 양육비 액수가 비양육자의 가처분 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 가산 요소의 상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②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의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비양육자의 최저생계비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 감산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³⁶⁾, ③ 비양육자가 재혼하여 재혼 가정의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 감산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³⁷⁾, ④ 비양육자가 노모에 대한 수술비나 간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또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양육비 감산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⑤ 이혼에 따른

34) 2012년 양육비 산정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열린 양육비 시민배심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일치하여 이런 견해를 피력하였다.

35)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및 가사소년재판커뮤니티 소속 법관들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견해이다.

36) 그러나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신의 최저생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양육비를 지출하게 되는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반대 견해도 있었다.

37) 한편 이러한 경우는 부양자녀의 수에 따른 감산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반대 견해도 있었다.

재산분할 당시 자녀의 양육비가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준으로서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 ⑥ 양육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비양육자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양육비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수입의 비율에 따라 줄어드는 반면, 양육자의 다른 가족이 보조양육자가 됨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보조양육비용 또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경우의 고용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었다.

한편,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로서 ① 부모 사이에 양육비 액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이는 양육비 산정의 가산, 감산 요소라기보다 양육비 산정의 일반 원칙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서로 합치된다면 실제 문제되는 경우가 없을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유력하였고, ② 면접교섭의 횟수가 사실상 공동 양육에 이를 정도로 많은 경우 이를 양육비 감산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양육비의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과도한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의 불합리한 주장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나.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의 적용 방법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의 적용 방법으로는 ①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부모 합산소득 구간을 이동하여 적용하는 방법, ② 해당 구간의 표준 양육비에 가산, 감산 요소 별로 일정한 가중치를 정하여 그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③ 가산, 감산 요소를 나열하고, 각 요소들을 감안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정하는 방법, ④ 가산, 감산 요소 중 지역 요소 및 자녀수는 가중치를 정하여 그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이를 적절히 나열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정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으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구현을 위하여 가산, 감산 요소를 나열하고, 법관의 재량으로 적절히 양육비를 가산, 감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였다.³⁸⁾

38)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및 가사소년재판커뮤니티 소속 법관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대다수의 법관들이 위 견해를 지지하였다.

6.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비교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산정 • 부모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저양육비 개념을 사용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전국 법원에서 활용될 것을 고려하여 자녀의 거주지를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산정기준표를 따로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평균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나의 산정기준표를 공표 하되, 지역 요소는 개별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로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자녀 1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된 산정기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육 자녀 2명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를 기준으로 산정기준표를 만들고, 자녀수를 가산, 감산 요소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나이 구간을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로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동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자녀 나이 구간 표현 방식 변경 • 민법 개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녀 나이는 만 19세 미만까지임. 그럼에도 자녀 나이를 21세 미만까지 표시한 것은, 19세까지만 계산할 경우 통계의 기초가 되는 표본수가 적어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시하게 된 것일 뿐, 양육비 지급 의무가 21세까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님(다만,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법원 내외에서 합의의 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별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 를 분석하여 이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 를 분석하여 이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양육비 개념이 최초 도입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최저양육비에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지역, 자녀수 외에 다른 가산, 감산 요소들을 열거하지 않고, 법관의 재량에 맡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지역, 자녀수 외에 중증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하여 교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가 쌍방 합의한 교액의 교육비, 재산 상황 등이 양육비 산정에 있어 가산, 감산 요소로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7.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의 의의

가. 양육비 액수의 현실화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 이후의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및 자녀 나이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에 관한 새로운 통계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육비 금액³⁹⁾을 적정화, 현실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통계에 근거한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재판자료로 활용하게 되면,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뢰와 승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 대략의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나. 구체적 타당성 제고 방안 마련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개별 요소들을 양육비의 가산, 감산 요소로서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개별 사안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양육비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고, 또 실제 사건에서 재판부가 위와 같은 개별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가산, 감산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양육비를 정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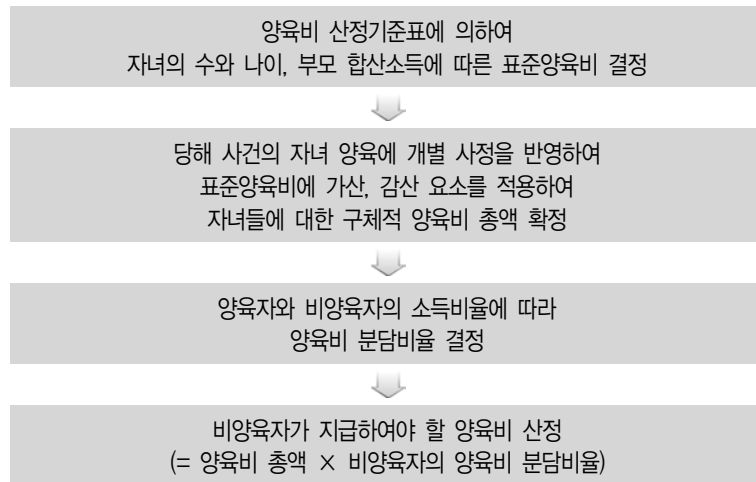
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국민의 의사 반영

양육비위원회의 발족으로 양육비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학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하고,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까지 수렴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나아가 공청회의 개최를 통하여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들을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39)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구체적 수치는 양육비위원회나 공청회의 가치판단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실사에 의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되었다.

IV. 양육비 산정기준 해설

1.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2.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 방법

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이용하여 표준양육비 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나이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지점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이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육 자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내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이고,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2인의 자녀 중 한 자녀의 나이가 만 7세이며, 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 임대수입이 월 100만 원인 경우, 아래 표의 세로축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 구간을, 가로축에서 400~499만 원 구간(150만 원

+200만 원+100만 원)을 적용하여 그 나이 구간과 합산소득 구간이 교차하는 구간의 양육비인 981,000원과 1,130,000원의 범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한다.

부모합산 소득	0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499만원	~599만원	~699만원	이상
자녀나이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000 20만원~58만9천원	653,000 59만원~70만7천원	761,000 70만8천원~83만3천원	900,000 83만4천원~95만8천원	1,012,000 95만9천원~105만9천원	1,106,000 106만원~131만5천원	1,526,000 131만6천원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000 23만9천원~59만7천원	705,000 59,8천원~79,1천원	878,000 79,2천원~94,2천원	1,000,000 94,3천원~12,3천원	1,238,000 112,4천원~128,5천원	1,334,000 128,6천원~154,6천원	1,759,000 154,7천원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000 18,5천원~62천원	708,000 62,1천원~80,4천원	902,000 80,5천원~98천원	1,059,000 98,1천원~113천원	1,202,000 113,1천원~128,6천원	1,371,000 128,7천원~163,8천원	1,906,000 163,9천원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000 31,3천원~67,9천원	755,000 68,8천원~85,1천원	947,000 85,2천원~102,1천원	1,095,000 102,2천원~120천원	1,305,000 120,1천원~141,2천원	1,520,000 141,3천원~178,2천원	2,046,000 178,3천원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000 34,3천원~72,5천원	844,000 72,6천원~97,9천원	1,115,000 98천원~115,9천원	1,204,000 116천원~131,4천원	1,424,000 131,5천원~154,6천원	1,668,000 154,7천원~196,8천원	2,270,000 196,9천원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000 31,4천원~107,2천원	1,185,000 107,3천원~124,4천원	1,303,000 124,5천원~133,1천원	1,361,000 133,2천원~154,4천원	1,728,000 154,5천원~185,1천원	1,974,000 185,2천원~209,7천원	2,221,000 209,8천원 이상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양육비 구간의 범위와 구간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다. 양육비 구간 평균값을 표준양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일률적으로 구간 평균값을 사용하기보다는 부모 합산소득의 액수에 따라 양육비 구간 범위 내의 적절한 금액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소득이 구간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보다 당해 구간의 최하한값 또는 최상한값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나. 가산, 감산 요소를 반영하여 구체적 양육비 총액 결정

위와 같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하여진 표준양육비를 ① 거주 지역, ② 자녀수, ③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④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⑤ 부모의 재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한다.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각자의 소득 비율에 의함이 원칙이나, 구체적 사례의 특수성에 따른 예외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득 비율에 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소득에 비하여 보유한 재산이 많아서 양육비가 가산된 경우, 늘어난 양육비 부분은 가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다.

라. 비양육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위와 같이 정한 양육비 분담비율에 따라 비양육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산정한다.

한편 비양육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비양육자의 소득으로 보고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비양육자가 장애나 중한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이유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최저 양육비(양육비 산정기준표상 199만 원 이하 구간의 하한)의 1/2은 부담해야 할 것이다.

3. 구체적 적용사례

가. 사례 1

- 가족관계: 원고, 피고, 만 16세 딸 1명, 만 8세 아들 1명
- 소득: 1) 원고는 월 평균 150만 원의 근로소득
2) 피고는 월 평균 180만 원의 근로소득, 상속재산으로부터 월 20만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
- 자녀들의 양육자: 원고
- 만 16세 딸은 매월 40만 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희귀질병을 앓고 있음.

1) 표준양육비의 결정

- 합산소득 : 1,500,000원+1,800,000원+200,000원=3,500,000원
- 딸의 표준양육비 : 1,115,000원

나이 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합산소득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의 교차구간

- 아들의 표준양육비 : 902,000원

나이 6세 이상 12세 미만 및 합산소득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의 교차구간

- 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 :

1,115,000원+902,000원 = 2,017,000원

2) 가산, 감산 요소를 반영하여 구체적 양육비 총액 결정

만 16세 딸에 대한 고액의 치료비 400,000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딸의 표준양육비 중 보건의료비 항목⁴⁰⁾ 또는 보충교육비 항목⁴¹⁾ 등의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 양육비는 2,417,000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이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비 분담비율은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150/350, 피고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200/350이다.

4) 비양육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 2,417,000원×200/350 ≒ 1,381,140원 이하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딸에 관한 양육비 분담액: 865,710원(≒1,515,000원×200/350) 이하

→ 아들에 관한 양육비 분담액: 515,420원(≒902,000원×200/350)

피고의 양육비 지급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381,14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법관이 재량으로 정한다.

40) [표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조사의 항목 및 세부내용에 있어,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안경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비 및 입원비 등), 영양제, 한약제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41) [표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조사의 항목 및 세부내용에 있어, 보충교육비(사교육비)인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나. 사례 2

- 가족관계: 원고, 피고, 만 10세 딸 1명
- 소득: 1)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고, 이혼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2) 피고는 월 평균 200만 원의 수입.
- 자녀의 양육자: 원고

1) 표준양육비의 결정

- 합산소득 : 2,000,000원
- 딸의 표준양육비 : 621,000원

나이 6세 이상 12세 미만 및 합산소득 200만 원 이상 299만 원 미만의 교차구간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621,000원⁴²⁾

2) 가산, 감산 요소를 반영하여 구체적 양육비 총액 결정

자녀 1인에 대한 가산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621,000원 이상에서 양육비가 정하여 질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가 1인인 경우 약 10% 정도 양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표준양육비에서 약 10% 정도 가산한 683,100원 가량에서 딸의 양육비가 확정될 것이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한편 양육자인 원고가 정당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자녀의 최저양육비 185,000원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한다.

4) 비양육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따라서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90,600원(=683,100원 - 185,000원×1/2) 가량의 금액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정한다.

42) 부모의 합산소득이 200만 원 이상 299만 원 미만 구간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경우 구간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보다 구간의 최저값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V. 양육비 산정기준의 활용

1. 양육비 산정기준의 한계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으로, 표준양육비에 대한 가산, 감산 요소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실질적 활용도가 높아졌고, 향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도 당사자들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실제 재판과정에서 양육비에 관한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함으로써,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양육비 산정에 대한 통일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우선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양육비의 액수가 양육비 산정기준 보다 현저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을 설득함으로써, 당사자들 스스로 자녀의 양육 책임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유의사항

가. 과거 양육비

양육비 산정기준은 2012년 통계를 기초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인

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는 물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등 참조), 당사자가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양육비 산정기준이 과거양육비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육비 판결, 심판이 이미 있었던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을 만들기 이전에 판결 또는 심판 등에서 인정된 양육비가,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양육비보다 적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면 양육비 변경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법원이 당사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양육비가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한 양육비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나이 구간에 따른 양육비 산정 여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나이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도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사후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생업에 바쁜 한부모들이 실제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판결 선고 시에 자녀의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를 정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전국한부모연합 전영순 공동대표의 의견⁴³⁾ 역시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현실화되지 아니한 장래의 비용으로서, 물가 상승이나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수입 및 경제 상황의 변화 등으로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의사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에 차등을 둘 것을 구하지 아니함에도 판결 선고 시에 자녀의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3) 전국한부모연합 전영순 공동대표는 2014. 5. 9. 서울가정법원 공청회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자녀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 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추심 지원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양육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보다 용이하게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은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양육비 산정에 관한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나이 구간의 변동에 따른 양육비 변경 청구의 경우

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소득이나 양육 상황 등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경우 양육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양육비에 관한 재판이 있는 후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양육비가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⁴⁴⁾에 관하여는, 재판부에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판결문 또는 심판문에의 적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표된 이후 가정법원이 설치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 법원에서 선고한 양육비 판결 또는 심판 992건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판결문 또는 심판문 상에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건수가 38건에 불과하였다고 비판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지금까지의 서울가정법원의 일반적 실무례는 양육비에 관한 판결문 또는 심판문 작성 과정에서 양육비의 산정 근거에 대한 구체적 적시 없이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기재하여 온 것은 사

44) 실제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제시된 양육비 액수보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제시된 양육비 액수가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이다.

물론 비송 사건인 양육비 청구 사건의 성격상 양육비의 산정에 있어 구체적인 도출 과정을 상세히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제시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양육비를 결정하는 경우 적어도 그 가산, 감산 요소에 대한 적시를 통하여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인 쇄 2014년 9월
발 행 2014년 9월
발행처 서울가정법원
인쇄처 경성문화사